

[]제조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
[]판매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 성합니다)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 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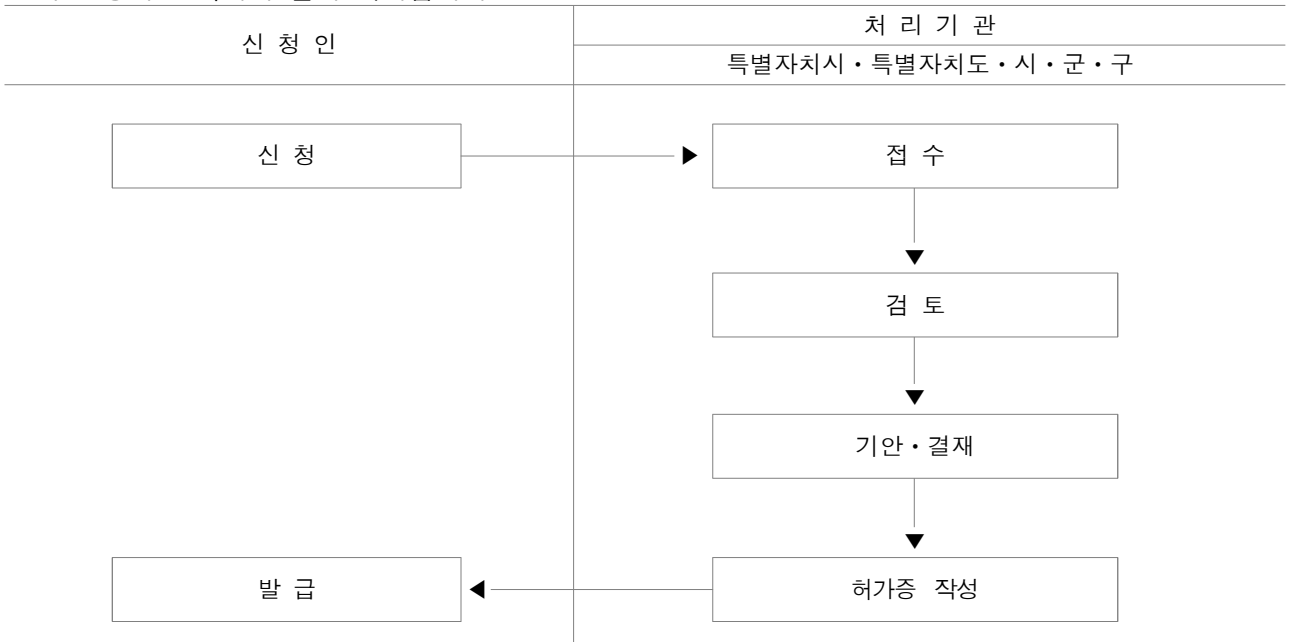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동일 사업소 내 여러 개의 고압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에 고압가스 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상호·대표자 변경에 따른 일괄 신고 대상시설 목록

고압가스 시설 허가번호